

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·조정한다.

1. 기술분쟁 및 수탁·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 및 고소·고발 사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나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른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·중재를 먼저 거치게 할지 여부 및 조정·중재 방향에 관한 사항
2.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기술분쟁 및 수탁·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의 처리 및 조정·중재 방향에 관한 사항
3.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4.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정책의 조율에 관

한 사항

5.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·제도 개선
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
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, 위
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중소벤처기업부차관,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, 대검찰청차장검사, 경찰
청차장, 특허청차장

2.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
분쟁조정·중재위원회의 위원장

3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른 수
·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

4.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
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②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(나
급)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
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
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촉위원의 해촉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(위원의 제척과 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특정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·자문·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·조정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·자문·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실무협의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

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(비밀보호)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기타사항)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